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2. 25.

북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식

1. 제출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인권존중을 위해 근무 시설 개선사업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환경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되던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안 제6조)
- 나.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안 제12조)
- 다. 위원회 간사를 공동주택과장에서 각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조례 통일성 부여(안 제14조, 제19조)
- 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정비(안 제35조)

마. 지원금 지원기준에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을 추가하고 지원 비율을 70%로 확대(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2. 31. ~ 2021.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인권존중을 위해 근무 시설 개선사업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1항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에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제1호서식 지원기준에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 항목을 추가하고 지원 비율을 신설하고, 자치구 분담률을 70%로 상향하여 공동주택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 안 제12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

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 14조 및 안 제19조는 위원회 간사를 공동주택과장에서 각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구조제 통일성을 부여하였습니다.

- 최근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망사고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여론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해 10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1)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우리 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본 개정안은 위 조례 제7조제1항2)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경비원 및 미화원의 근무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1) [붙임 1] 참고

2) [붙임 2] 참고

근로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조례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시행일 : 2021. 10. 21.] 제65조의2제1항

부칙 <제17544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377호, 2020.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